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의 중요한 요구

김 철 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법검찰기관들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과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하겠습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15폐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이 땅우에 부흥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는 데서 우리 사법검찰일군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당과 혁명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과 임무에 맞게 사법검찰기관들의 법적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온 나라에 혁명적법질서를 튼히 세워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을 그대로 이어나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법검찰기관들의 법적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온 나라에 혁명적 법질서를 세워 당의 령도밑에 우리 식의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해나가야 한다는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법적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온 나라에 혁명적법질서를 튼튼히 세워 우리 식의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자면 검찰기관과 재판기관을 비롯한 법기관 일군들이 형법에 규정된 범 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울데 대한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운다는것은 형법의 조문에 규정된 범죄의 종류와 형태, 위험성에 비추어보아 같은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는것을 말한다.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울데 대한 원칙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법적으로 철저히 규제할데 대한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의 요구를 형법적으로 직접 반영하고있는 형법의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 우리 식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의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이 원칙이 사회주의법치국 가의 본질적요구를 구현하고있는 원칙이기때문이다.

사회주의법치국가는 본질에 있어서 당의 령도밑에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국 가이다.

당의 령도밑에 인민을 위한 법치국가로 된다는데《법지상주의》의 위선적인 구호밑에 사회의 모든 권력을 틀어쥔 특권계급을 위한 법치를 실시하고있는 자본주의《법치국가》와 다른 우리 식 사회주의법치국가의 본질적특징이 있다.

사회주의법치국가는 그 인민적성격으로 하여 법을 만드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만들며 법을 집행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 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법치는 국가와 사회를 관리하는 방법과 원칙의 하나로서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법을 미리 만들어 공포하고 법에 따라 모든것을 다스리는 국가가 다름아닌 법치국가이다.

법치국가가 법을 가지고 모든것을 다스리는 국가인것만큼 그 면모는 법체계를 완비하

는것과 함께 모든 권력적활동을 철저히 법에 따라 진행하는데서 나타나게 된다. 모든 권력적활동을 법에 따라 진행한다는것은 누가, 어떤 권한의 범위안에서, 어떤 절차에 따라 권력적활동을 진행하며 권력적활동의 내용은 어떻게 되여야 하는가를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놓고 그대로 권력을 행사하도록 일상적으로 감독통제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로부터 사회주의법치국가는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필요한 부문 법들뿐아니라 이를 구체화한 규정들과 세칙들도 다 갖추어져있는 국가 다시말하여 법체계 가 완비된 국가로 되여야 한다.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울데 대한 원칙은 바로 사회주의법치의 이러한 요구를 구현하여 제정된 원칙이다.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울데 대한 원칙은 두가지 내용을 담고있다고 볼수 있다.

우선 형법이 사회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는것이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을 규제한 법이다. 따라서 형법이 범죄와 형벌을 규제한 부문법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자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범죄적현상들을 빠짐없이 법규범으로 명확히 규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르는 형벌을 정확히 확정하여야 한다. 형법이 사회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여야 사회주의법치국가실현의 무기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다할수 있다.

또한 오직 형법에 규정되여있는 그러한 형태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워야 한다는것이다.

형법은 온갖 범죄적침해로부터 우리의 국가사회제도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옹호보호하기 위한 계급투쟁의 위력한 법적무기이다. 때문에 형법의 본질에 맞게 형법에 범죄를 명확히 규정하고 오직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워야 형법이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사명을 다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사회주의법치국가의 실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다.

이와 같이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울데 대한 원칙은 사회주의법치국가의 본질에 부합되는 원칙인것으로 하여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의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이다.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것이 우리식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의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에서 형법이 차지하는 위치와 관련된다.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에서 형법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것은 부문법으로서 형법이 가지는 규제대상과 규제방법에서의 특성과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형법은 국가사회제도, 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와의 투쟁을 목적으로 제정 된 범죄와 형벌을 규제한 법으로서 규제대상과 그 실현방식에서 다른 부문법들과 다른 특 성을 가지고있다.

우선 형법은 규제분야에 있어서 사회생활의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여있지 않으며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고있다.

형법은 재산관계를 규제하고있는 민법이나 로동관계를 규제하고있는 로동법 등과 달리 정치, 경제, 문화 등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의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고유한 규제대상으로 하고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자기의 규제대상으로 하고있다는데 일정한 분야의 일정한 관계만을 규제대상으로 하고있는 다

른 부문법들과 다른 형법의 특징이 있는것이다.

또한 형법은 법적제재에 있어서 폭력적인 성격의 법이다.

일반적으로 법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그 준수집행이 담보되는 행동준칙이다. 따라서 형법이 아닌 다른 부문법들에서도 법적제재를 규제하고있으며 제재를 그 내용으로 적지 않게 규제하고있는 법들도 있다.

그러나 다른 부문법들에서와는 달리 형법에서의 제재는 그 폭과 강도에 있어서 매우 강하다. 대비적으로 볼 때 형법에서 규제하고있는 법적제재인 형벌은 재산적성격을 띠는 민법상의 민사적제재나 규률적성격을 가지는 행정법상의 제재 등과는 달리 형법규범을 위반한 범죄자의 인신상자유를 강하게 구속하며 지어 범죄자의 육체적생명까지도 박탈하는 징벌수단으로서의 강한 폭력적성격을 가진다.

형법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게 되는것은 형법이 매개 나라의 국가사회제도, 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와의 투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형법이 가지는 규제대상과 그 실현방식에서의 이와 같은 특성은 형법의 적용에서 형법에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수 있는 각이한 범죄현상들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할것을 요구한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고 법적제재의 폭과 강도에 있어서 그 어느 법보다 폭력적인 성격이 매우 강한 법인것으로 하여 형법은 사회의 모든 범죄에 대하여 철저히 규제하여야 하는것이다.

더우기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법치국가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법치국가이다. 우리가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자고 하는 목적도 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보다 철저히 그리고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주자는데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법치국가는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사회제도의 본 성적요구에 맞게 온갖 범죄적침해로부터 국가사회제도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법적으로 철 저히 보호할수 있도록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명확히 규 정하고 그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것을 중요한 형법적원칙의 하나로 규제하게 되 는것이다.

이와 같이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울데 대한 원칙은 그것이 사회주의법치국가의 본질적요구에 부합될뿐아니라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에서 형법이 차지하는 위치로 하여 사회주의법치국가실현의 중요한 요구로 된다.

선군시대 사법검찰기관들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울데 대한 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우리 당의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을 실현해나가는 길에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선군시대 사법검찰기관들이 우리 식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에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자면 우선 립법기관과의 련계밑에 사회생활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범죄현상들을 법화 하는데 이바지함으로써 형법규범을 더욱 완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형법은 범죄 즉 사회적으로 어떤 위험한 행위가 범죄인가를 규제한 법규범이며 이런 의미에서 형법을 범죄법이라도 부른다.

우리의 사회주의형법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에 복무할 사명을 지니고있는것만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법질 서를 튼튼히 세워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반대하고 저해하는 온갖 범죄적현상들을 형법 에 명확히 규제하여야 한다. 재판기관과 검찰기관을 비롯한 사법검찰기관들에서는 범죄와 위법현상들과의 법적투쟁을 벌려나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새로운 범죄적현상들에 대하여 정확히 확정하고 립법적절차를 통하여 형법적으로 규제하는 사업을 적극 벌려나감으로써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수 있는 온갖 범죄들을 빠짐없이 형법에 규제하여야 한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들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그에 맞는 형 사책임을 확정할데 대한 형법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선군시대 우리 식 사회주의법치국가 를 건설할데 대한 우리 당의 사상을 실현하는데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할수 있다.

선군시대 사법검찰기관들이 우리 식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에서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자면 또한 모든 사법검찰기관 일군들이 형법에 대한 높은 리론적자질과 실무능력을 소 유하여야 한다.

우리의 공화국형법은 온갖 범죄적침해로부터 국가사회제도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옹호 보장할 사명을 지니고있다. 이것은 사법검찰일군들이 정치사상적으로 준비될뿐아니라 형법 에 대한 깊은 전문지식과 높은 실무능력을 갖출것을 요구하고있다.

더우기 사법검찰사업자체가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범죄적현상을 대상으로 하고있는것만큼 형법에 대한 높은 리론적자질과 실무능력을 가지지 못하면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추궁할데 대한 형법의 일반적원칙을 옳바로 관철해나갈수 없을뿐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에 저해를 주는 엄중한 결함을 범할수 있다.

모든 사법검찰기관 일군들은 형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높은 실무능력을 갖출 때 다양한 양상을 띠고 나타나는 위법행위들속에서 형법상의 범죄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우리 당의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자신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사법검찰기관 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법일군들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 사책임을 지울데 대한 형법적원칙이 우리 식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는데서 견지하여 야 할 중요한 요구의 하나라는것을 명심하고 모든 사건처리과정에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 나가야 할것이다.